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개편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37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개편(안 제6조의2 등)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12. 18.

다. 회 부 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와 시·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중에서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개편(안 제6조의2 등)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함(안 제6조)
- 현행법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함.
-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를 두고, 정책협의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부처 및 시·도 문화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위촉함(안 제6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
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②·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
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
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⑤·⑥ (생략)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
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

----- 5년 -----

-----.

1.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후단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지역문화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
속으로 지역문화정책협의회(이

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략)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이하 “시·도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와 시·도 정책협의회----- 협의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고-----

-----.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실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신 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행정안전부 다. 농림축산식품부 라. 산업통상자원부 마. 국토교통부 바. 해양수산부 2. ----- ----- ----- 소속의 실장급 ----- ----- 3. 시·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⑤ 정책협의회는 필요하면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시·도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다. 검토사항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현행법 제6조의2¹⁾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포함해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동 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근 3년('22년~'24년)간 9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4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 이후 5기 위원회는 미구성 상태임.

-
- 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력위원회와 시·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개정안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주요 정부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지역문화의 격차 문제가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 재정여력 약화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총괄적인 정책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참고로, 2022년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 협의체로 대체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확정²⁾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³⁾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동 일괄개정법률안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이 포함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다만, 현행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대부분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2) 2022년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① 1년 이상 구성되지 않은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 연평균 본회의 개최 실적이 1회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③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2인 이하인 위원회, ④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치목적·기능·심의대상이 유사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였음.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022.9.30. 발의, 의안번호 제2117676호

있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동 법률안에 따라 전환되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는 필요하면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 전문가를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민간위원 없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수립·반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 정책협의회로 개편하더라도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⁴⁾이 발의된 바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⁵⁾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책협의회의 의결

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2023.6.22. 발의, 의안번호 제2121401호

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책협의회의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규정이나 위원장 직무 대행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은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의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아래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위임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①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방호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③ 방호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 기본법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u>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의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격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를 협의체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학계 및 지역문화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와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수 있어 개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참 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실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총 9회)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3	3	3	-	-	-	-
2023년	4	4	-	4	-	-	-
2024년	2	2	-	2	-	-	-

[참고 : 최근 3년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회차별 안건]

구 분	일 시	안 건
8차 (3기 위원회)	'22.3.23.	·(안건1/보고) 2020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안건2/보고) 2021년 문화도시 사업 성과
4기 위원회 구성('22.7.7.~'24.7.6.)		
1차	'22.8.10.	·(안건/보고)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방향
2차	'22.12.7.	·(안건/보고)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 방안 수립상황
3차	'23.5.31.~6.2.(서면)	·(안건1/보고) 2023년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 추진현황 ·(안건2/보고) 2023년 문화의달 행사 추진계획
4차	'23.6.19.~6.23.(서면)	·(안건/보고) 대한민국문화도시 공모 계획
5차	'23.9.26.~10.11.(서면)	·(안건/보고) 2023년 문화의달 행사 개최계획
6차	'23.12.18.~12.26.(서면)	·(안건/보고) 지역문화분야 주요정책과제 실적
7차	'24.2.13.~2.19.(서면)	·(안건/보고) 2024년도 지방시대 부문별 시행계획
8차	'24.6.14.~6.20.(서면)	·(안건/보고) 2023년도 지방시대 연차보고서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8,000	8,000	-	-
2023년	-	-	-	-	5,000	5,000	-	-
2024년	-	-	-	-	2,400	2,400	-	-

* 별도 예산편성액은 없음 (공통경비에서 집행)